

의안번호	2202711
의 퇴 인	황희의원
회 답 일	2024. 9. 4.
추 계 번호	24C1906

국민체력 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정안에 따라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및 국민체력위원회 설치·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,500만원, 2030년 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1,500만원(연평균 2,3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 (안 제5조)	90	-	-	-	-	90	18
국민체력위원회(안 제6조)	5	5	5	5	5	25	5
합 계	95	5	5	5	5	115	2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 등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국민체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체력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6조(국민체력위원회)	종합계획의 수립 등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민체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하며, 위원회의 위원은 국민체력 향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함	
3	안 제7조(체력인증 및 운동처방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력 향상에 필요한 체육 활동에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과학적 체력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체력인증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	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결과에 기초하여 운동처방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8조(체력인증기관의 지정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력인증 기관(이하 "체력인증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고, 체력인증기관에 대하여 체력인증 업무의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5	안 제9조(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)	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을 실시함 -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-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 - 그 밖에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활동 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	의무규정
6	안 제10조(체력인증자료의 활용)	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력인증자료를 활용하여 국민체력에 관한 통계를 생산하여 발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조(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 등)	○	
2	안 제6조(국민체력위원회)	○	
3	안 제7조(체력인증 및 운동처방)	×	실시 중
4	안 제8조(체력인증기관의 지정)	×	실시 중
5	안 제9조(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)	×	실시 중
6	안 제10조(체력인증자료의 활용)	×	실시 중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의 체력인증 및 운동처방, 체력인증기관의 지정, 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, 체력인증자료의 활용 관련 사업은 이미 실시 중으로 개정안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○ 참고로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2]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

조·항(조제목)	현행 사업(2024년)
안 제7조(체력인증 및 운동처방)	- 국민체력 100 사업 인증센터 76개소 운영 14,435백만원
안 제8조(체력인증기관의 지정)	-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행, 사업팀(8명) 운영 400백만원
안 제9조(국민체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실시)	- 국민생활체육조사 309백만원
	- 성별·연령별 체력인증기준 관련 연구 100백만원
	- 국민체력 100 홍보사업 450백만원
	-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500백만원
안 제10조(체력인증자료의 활용)	- 국민체력 측정통계 조사 120백만원

자료: 문화체육관광부

-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·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국민체력종합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- 안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국민체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
- 국민체력종합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
 - 문화체육관광부는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,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

[표 3] 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국민체력종합계획 수립 (제6조)	90	-	-	-	-	9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국민체력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6조)

- 국민체력위원회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
 -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 - 제정안은 국민체력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문

화체육관광부차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원장을 제외한 (최대)위원 14인 중 50%인 7인이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

-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⁾
-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」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라 국민체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7명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7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○ $7\text{명} \times 4\text{회} \times 250,000\text{원} = 7,000,000\text{원}$

[표 4] 국민체력위원회 설치·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국민체력위원회 설치·운영 (안 제9조)	7	7	7	7	7	35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□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1)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